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안 번호	03265
----------	-------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 강동구3)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연서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외래생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생태계교란 식물 18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조사·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에서도 관리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관리 대상별 특성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서울시의 생태계 관리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안 제2조)

둘째,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안 제6조), 조사가·모니터링·홍보 등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